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04 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유동수·복기왕·문대림

김교흥 • 박 정 • 최민희

송기헌 · 김병기 · 임광현

허종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, 일정,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 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.

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7 신설).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7(계정대리인의 지정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이동통신단 말장치 제조업자,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한다)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(이하 "계정대리인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

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23조의7(계정대리인의 지정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이동통 신단말장치 제조업자,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 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 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 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 공급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 다)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 (이하 "계정대리인"이라 한다)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
	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
	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
	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 공급
	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
	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
	다)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
	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
	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
	(이하 "계정대리인"이라 한다)
	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
	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
	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
	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
	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
③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 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인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.